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결과분석

-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

2007. 7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

2007. 7

김 국 신 (동북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 인 곤 (동북아연구실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1
II.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2
1.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과 쟁점	2
2. 2·13 합의 주요 내용과 쟁점	3
III. 2·13합의 이행 실태	7
1. BDA 문제 해결 이전	7
2. BDA 문제 해결 이후	9
IV.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	12
1. 북·미 양자회담	12
2. 6자 수석대표회담 개요	13
3. ‘언론발표문’ 발표	16
4. 평가	17
V. 핵협상 추진방향과 예상쟁점	18
1. 핵협상 추진방향	18
2. 협상의제 및 쟁점	19
VI. 정책적 고려사항	21
〈부록 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2
〈부록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5
〈부록 3〉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	29

I. 문제제기

-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단행('06.10.9)한 직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10.14)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강화되었음.
 - 그러나 부시 미 행정부는 중간선거(11.7)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이후 대북정책을 신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및 북·미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함.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07.2.8~13) 결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관한 합의문(2·13 합의)이 서명되고, 2·13 합의에 따라 5개 실무회담 및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3.19~22)가 개최되었음.
 - 그러나 북한이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 2·13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합의 이행이 지연됨.

- 미국측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6.19)된 이후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개최(7.18~20)됨.

- 본 보고서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간략히 검토하고 2·13 합의 이행 실태를 살펴본 후,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북핵협상의 추진방향과 협상의제 및 쟁점을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음.

II.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1.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과 쟁점

-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
기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두 축으로 하고 있음.
 -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포기과 함께 이른 시일 내
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수용함.
 - 한·미·일·중·러 5개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 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에너지·교역·투자분야의 협력을 약속함.
- 아울러 9·19 공동성명 제4조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
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함.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 북한: 모든 핵무기 및 현존 핵 계획 포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 미국: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 확인
-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행
-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권리 존중,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

- 북·미: 상호 주권 존중, 평화공존,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 조치
-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과거와 현안 사항 해결 및 관계정상화 조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의 협력>

- 5개국: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할 용의 표명
- 남한 200만KW 전력 공급에 관한 제안(2005.7.12) 재확인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개최

<합의이행 원칙>

-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이행

- 그러나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NPT 복귀 시점, 핵사찰 방법, 북한의 안전보장 방식,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의 속도와 조건, 에너지 지원 형식 등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부터 북한과 미국은 합의문 해석에 차이를 보였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19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미국이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면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등 5개국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임.

2. 2·13 합의 주요 내용과 쟁점

-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채택된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음.

- 9·19 공동성명을 실천하여 핵 폐기 과정이 개시된다는 의미가 있음.

-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30일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5개 실무그룹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임.
 -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일 관계정상화 양자의 실무그룹은 공동 의장으로 구성되며,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 경제·에너지 협력은 한국,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러시아가 의장국이 됨.

* 한편, 미 국무부는 2·13 합의 직후 30일 이내에 「방코텔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해 주기로 약속함.

- 60일 이내 북한은 영변 원자력발전소 및 핵무기 개발 목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과 봉인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 동시에 60일 이내 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 양자회담 및 북·일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북한의 초기 조치에 대한 대가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중유 5만 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에 합의함.
-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모든 핵계획을 완전히 신고하고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국들은 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 초기단계 조치의 이행 완료 이후, 6자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하기로 함.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 내용>

구 분	북측 조치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조치
초기 단계	30일 이내	<p align="center"><5개 실무그룹(W/G)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 북·미 관계정상화 - 북·일 관계정상화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60일 이내	<p><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함. - IAEA의 감시 및 검증활동 수행 <p><핵포기 대상의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p> <p><대북 긴급 에너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유 5만 톤 상당 지원 <p><북·미 양자회담 및 북·일 양자회담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진전 - 북·일간 과거사 및 미결 관심사안 해결
다음 단계	<p><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연료봉 추출 플루토늄 포함 <p><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연 감속로 및 재처리시설 포함 	<p><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유 95만 톤 상당 지원 * 중·미·러·한은 ‘평등과 형평’ 원칙에 기초하여 대북 경제지원 분담, 일본은 우려사항 해소 후 참여
	<p align="center"><6개국 장관급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9 공동성명 이행 확인 -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 <p align="center"><한반도 평화체제 협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별도 포럼’ 개최 	

- 2·13 합의는 북한 핵실험 이후 고조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안정적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연계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향해 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그러나 이미 제조된 핵무기와 플루토늄 문제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 등은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됨.

Ⅲ. 2·13 합의 이행 실태

1. BDA 문제 해결 이전

<5개 실무그룹회의 개최>

- 2·13 합의 이후 30일 이내 5개 실무그룹회의 개최 조항에 따라 5개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었음.
 -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2007.3.5~6, 뉴욕)」에서는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등 현안 전반에 대하여 실무적인 토의가 진행됨.
 -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3.7~8, 하노이)」는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성과없이 종료됨.
 -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3.15, 베이징)」에서 한국측은 초기 단계의 중유 5만 톤 지원의사를 표명, 신속한 합의 이행을 촉진함.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3.16, 베이징)」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도출함.
 - 「비핵화 실무그룹회의(3.17~18, 베이징)」에서 북한측은 IAEA 사무총장의 방북 결과(3.13~14)를 설명함.

<BDA 동결자금 해제>

- 미 재무부는 BDA 동결자금의 전액해제 원칙에 관한 합의 성명을 발표(3.19)하였음.
 - 북한은 BDA에 동결된 2,500만 달러의 자금을 베이징의 「중국은행」(BOC)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음.

- 미 재무부는 북한이 이 자금을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북측 제안을 수용함.
- 미 재무부가 BDA 동결 북한자금의 전액 해제방침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금 확인 관련 기술적인 문제로 완전한 해결이 지연됨.

<6자회담 휴회>

- 제6차 6자회담(3.19)에서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BDA 자금이 전면 해제되면 영변 핵활동을 중단할 것이고, 핵시설 폐쇄조치를 취한 뒤 IAEA에 복귀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회의에는 불참하였음.
 - 수석대표회의(3.22)에서 휴회를 결정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회담을 속개키로 합의함.
- 이후 북한은 BDA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2·13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60일 이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음.
 - BDA 동결자금이 회수되면 영변 핵시설을 신속히 폐쇄할 수 있다고 주장함.

<BDA 문제 완결>

- 6자회담이 휴회된 이후, 미 재무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3.25~4.6)하여, 중·북·마카오측과 BDA 동결자금 해제문제를 협의하였음.
 - 미 재무부는 마카오 당국의 모든 북한 관련 동결구좌의 해제 결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4.10)함.

- 그러나 북한은 국제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동결된 2,500만 달러의 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계좌이체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향후 정상적인 국제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함.
- BDA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 자금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중개를 통하여 러시아 「중앙은행」에 이체되고, 다시 러시아 「달콤뱅크」(극동상업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에 입금(6.19)되었음.
 - 미 재무부의 BDA 조치('05.9.15) 이후 21개월 만에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완전 종결됨.

2. BDA 문제 해결 이후

<힐 차관보 방북>

- BDA 문제가 해결된 직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의 초청으로 방북(6.21~22), 박의춘 외상 및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 등과 초기조치 이행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이는 제임스 켈리 방북('02.10.3~5)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위 당국자의 방북임.
- 힐 차관보는 방북 이후 기자회견(6.26)에서 북한이 영변원자료를 즉각 폐쇄할 용의가 있으며, 불능화 등 2단계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하였음.
 - 북한측과 HEU 문제를 철저히 논의를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함.

- 또한 2008년에는 북한이 이미 생산한 핵연료와 핵무기 및 폭발장치를 포기하고 북·미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IAEA 대표단 방북>

-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IAEA 실무대표단이 방북(6.26~30), 북한 핵시설 폐쇄·검증문제 등을 협의하였음.
 - 북한의 IAEA 사찰관 추방('02.10) 이후 4년반 만에 IAEA 인사들의 영변 핵시설 방문임.
- IAEA 대표단은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고, 북측과 2·13 합의 초기조치의 핵심 사항인 핵시설 폐쇄·봉인의 검증·감시방식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였음.
 - ①영변 5MW 원자로, ②건설 중단된 영변 50MW 원자로, ③태천 200MW 원자로, ④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⑤핵연료봉 제조 시설 등 5개 시설을 폐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봄.
- IAEA는 임시이사회를 개최(7.8)해 '북한 핵시설 감시·검증단 파견'을 의결하고, 10명의 검증단을 북한에 파견(7.14)하였음.

<중국 외교부장 방북>

-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7.2~4)하여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 고위인사들과 회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북핵문제, 6자회담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양제츠 외교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7.3)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보와 안정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는 중국측 입장을 표명하였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징후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2·13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음.

<핵시설 폐쇄·봉인>

- 한국 측이 제공하는 중유 5만 톤 가운데 1차분인 6,200톤을 실은 배가 북한에 도착하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7.14)하였음.
- 핵시설 폐쇄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방북(7.14)한 IAEA 사찰단은 영변 5개 핵시설을 봉인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음.
- IAEA 사찰단 2명은 북한에 상주하며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하지만, 북한은 이들이 5개 시설 이외의 다른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IAEA 대표단의 활동은 사찰이 아니라 검증·감시에 국한됨을 강조하고 있음.

IV.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

1. 북·미 양자회담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앞두고 북·미 수석대표간 양자회담 (7.17)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에서 개최되어, 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등 다음 단계의 협상의제를 논의하였음.
- 북한은 2·13 합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응하는 적당한 대가를 제공하면 핵 폐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음.
 - 다음단계 조치의 목표와 6자회담 당사자들의 의무, 일련의 행동 등에 대한 개념규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북한은 영변원자로 가동중단을 발표(7.15)하면서 핵 불능화의 전제조건으로 북·미 양자대화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한 바 있음.
- 반면, 미국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기존 핵시설의 불능화를 다짐한 2·13 합의의 다음단계 이행이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하였음.
 - BDA 문제로 지체된 2·13 합의의 신속 이행을 추구함.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함.

2. 6자 수석대표회의 개요

가. 6개국의 기본입장

- 미국은 이라크와 이란 등 중동문제, 국제적 핵확산 방지, 2008년 대선 등을 고려하여 2·13 합의의 조기이행을 통한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금년 내 북핵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종료, 2008년 내 비핵화의 나머지 과정 수행에 목표를 둠.
 -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벽한 신고와 농축우라늄 문제를 중시함.
-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이행과 핵프로그램 신고를 수용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였으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변화를 강조하였음.
 - 회담종료 직후(7.21) 김계관 부상은 핵시설 해체를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핵시설 폐기와 핵무기 폐기를 구분함.
- 중국은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 및 다음 단계 이행문제를 내세우며 회담의 모멘텀 지속을 중시하였음.
- 한국은 북한의 조기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 북한 설득을 위해 지속적 원조를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양보도 설득하기로 함.

- 일본은 다음단계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정치를 고려하여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음.
 -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대북 에너지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함.
- 러시아는 북한에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미간 의견차를 조정하려는 입장을 취하였음.

나. 주요 논의사항

- 수석대표들은 기초연설을 통해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등 다음단계 조치의 이행문제, 6자 외교장관회의 및 5개 실무그룹회의 개최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음.
 - 특히, 북한의 다음단계 조치 신속 이행문제와 5개국의 상응조치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협의되었음.
 -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2·13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문제>

- 초기단계 이후조치인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첫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북한은 금년 내 신고와 불능화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 바, 이는 심각한 경제난과 에너지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상응조치에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자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였음.
 - 특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함.
- 북한이 전향적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힐 차관보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원한다”고 말했음.
 - 이는 2·13 합의에 명시된 중유 100만 톤 이외의 추가 경제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임.

<대북 중유제공 문제>

- 북한은 불능화 및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받게 될 중유 95만 톤 상당의 지원을 받는 방식을 처음으로 밝혔음.
 - 중유의 경우 북한이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동일 가치의 다른 품목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북한은 중유뿐만 아니라, 발전소 개·보수 및 유류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도 바란다는 뜻을 피력함.
- 한·미·중·러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하였음.
 - ‘중유바우처’는 불능화 및 신고 조치를 세부 이행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 단계에 따라 책정된 지원 품목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문서로 규정한 것임.

- 이는 북한이 취한 행동만큼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임.
- 북한은 저장시설의 한계를 감안해 중유 95만 톤을 매달 5만 톤씩 받기를 희망했으나, 자신들의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
- 수석대표들은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제공 등에 관한 시간표를 마련하기 위해 집중 조율 하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였음.

<기타 문제들>

- 이외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농축우라늄 프로그램·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3. ‘언론발표문’ 발표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3일동안 진행된 6자 수석대표회의를 결산하는 언론발표문을 발표(7.20)하였음.
- 8월 중 비핵화, 에너지·경제지원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5개 실무그룹회의를 모두 개최하기로 하였음.
 - 불능화 및 신고 단계의 이행 로드맵을 집중 협의

- 9월초 제6차 6자회담 2단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6자회담 본회의에서는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불능화 및 신고 단계의 이행 로드맵을 도출함.

4. 평가

- 이번 수석대표회의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및 상응조치에 대한 시간표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되어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음.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회담장 주변에는 전망을 어느 정도 낙관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보도 (7.19)함.
- 이번 회담을 통해 중요한 기초적 논의가 이루어져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차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이행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마련되었음.
- 그러나 불능화 시한문제, 신고대상 핵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초기단계 이행조치인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방법을 놓고도 의견차가 적지 않았다고 함.
-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때 어떠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음.

V. 핵협상 추진방향과 예상쟁점

1. 핵협상 추진방향

- 향후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은 ①핵시설 폐쇄 → ②핵프로그램 목록 신고 → ③핵시설 불능화 → ④핵무기 해체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단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북한의 대미·대일 수교, 경제·에너지 지원 등 정치·경제적 관계개선도 진행될 것임.
- 협상채널은 6자회담 본회담, 5개 실무그룹회의, 6자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진행될 것임.
- 5개 실무그룹회의는 본 회담에서 합의된 안건을 기술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지만, 각 실무그룹간 협상이 병렬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임.
 - 각기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며 안건들을 상호 연계시키지 않을 것임.
- 6자 외무장관회담은 본 회담에서의 북핵협상이 새로운 단계로 신속하게 발전·진입할 수 있도록 미해결된 문제점들에 대해 포괄적인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게 될 것임.
- 그러나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미 양국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핵불능화 → 테러지원국 해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 핵폐기 → 평화협정 체결 → 북·미관계 정상화
- 북한: 에너지·경제지원 →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협정 체결 → 핵폐기

2. 협상의제 및 쟁점

- 한·미·일은 핵불능화를 핵 시설의 폐기·해체 직전의 단계로서,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핵심 부품·장비의 기능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불능화의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 북한은 핵폐기 과정의 신속한 진전보다는 경제·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핵군축론을 제기하여 핵무기 폐기 속도를 조절함.
 - 또한 보다 많은 에너지·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북·미 수교 이후 핵문제 해결이라는 수순을 관철하려 할 경우, 6자회담은 난항을 겪게 될 것임.
- 한편, 미국과 북한은 2·13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여 협상이 지연될 수 있음.
 - 북한은 경수로 지원 요구,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미국은 북한 인권 개선, 미사일 협상 재개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한과 미·중의 4자회담을 재개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먼저 4자회담 참여국의 입장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이 참가하는 가운데 북·미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7.13)한 바 있음.
 - 협상 진행과정에서 일·러의 입장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북핵폐기 협상안건 및 예상의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협상	북한	·핵시설 폐쇄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 ·핵시설 불능화	·핵물질(플루토늄, 농축우라늄) 폐기	·핵무기 해체
		·검증·감시	·NPT 복귀	·IAEA 핵사찰	
안건	5개 당사국 중유 5만톤		·중유 95만 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중단	·평화체제 협상 ·북·미,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 ·대북 경제지원	·북·미, 북·일 수교 ·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안전 보장
예상의제	북측 희망	·핵시설 가동중단	·경수로 건설지원	·핵군축 회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폐
	미국 희망		·철저한 핵 목록 신고	·무제한 핵사찰 ·무기·마약·밀수품 등 불법거래 중단	·인권문제 ·미사일회담 재개 ·생·화학무기 폐기
	남한 희망	·남북정상회담	·군사회담 정례화 ·군사적 신뢰구축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무기 감축

VI. 정책적 고려사항

- 영변 핵시설이 폐쇄·봉인됐고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핵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대상, 핵무기 및 농축우라늄 문제 등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음.
 - ‘핵 불능화’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이라크 안정화 실패, 이란 핵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입지가 약화된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 지연되면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대타협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핵문제 해결 없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임.
-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서두르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폐기가 확인된 이후 체결해야 할 것임.
- 북핵문제가 부시 대통령 임기('09.1)내에 완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차기 행정부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는 바,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주한미군의 위상과 맞물려 있는 바, 평화체제 협상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임.

<부 록 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현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부 록 2>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007.2.13, 베이징)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

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VI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중화인민공화국, 미합중국, 러시아연방, 대한민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조 5항 및 IV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루어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부 록 3>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 (2007.7.20, 베이징)

- I.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베이징에서 2007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그리고 블라디미르 라흐마닌 러시아 외무부 본부대사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 II.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의 조치와 진전을 검토하고,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위한 모든 참가국들의 건설적 노력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상호 신뢰증진 및 상호 관계개선을 위해 생산적인 양자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진 점을 환영하였다.
- III.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다음단계 기간 중 조치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토의를 가졌으며 아래와 같은 공동의 컨센서스에 도달하였다.
 1. 참가국들은 2005.9.19 공동성명과 2007.2.13 합의상의 공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 중유 95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4. 모든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명시된 각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IV. 상기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해, 참가국들은 아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8월 말 이전, 한반도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2. 9월초, 참가국들은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여, 모든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동의 컨센서스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3.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 이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및 공동의 컨센서스의 이행을 확인하고 촉진하며, 또 동북아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북경에서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	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객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Studies Series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r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9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7(代), 팩스 : 901-2543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7년 7월 일
발행일	2007년 7월 일
